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공 유 수 면 관 리 및 매 립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의 적정성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33호, 2022. 12. 27. 공포, 2023. 06.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추가적 고려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법률 개정조항에 맞추어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축물 관련 점용·사용허가 시 고려기준 삭제(안 제6조제2항 삭제)

법 제12조 개정으로 전반적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고려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내용상 중복되는 기존 건축물 관련 점용·사용허가 시 고려기준을 삭제

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의 기준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등의 기준 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인공구조물 설치 및 토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

다. 인용조문 정비(안 제12조)

법률 개정으로 기존 법 제12조 본문이 제12조제2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점용·사용허가 등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공구조물 설치 및 토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
2.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를 “법 제1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호”를 “법 제12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 본문”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를 “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을 위한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오염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태풍·지진 등 재난에 대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항만 운영 및 수산업 등의 피해에 대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입지 및 배치의 적정성 나. 건축물의 규모·형상 및 구조의 적정성 5. 매립요청지의 갯벌·수리현상(水理現象) 및 저서생물(低棲生物: 바다·늪·하천·호수 따위의 밑바닥에 사는 생	제6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물을 말한다) 등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영향을 줄이는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2조(권리자 등) ①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7. (생략)

② 법 제12조제2호에서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2. (생략)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

제11조의2(점용·사용허가 등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공구조물 설치 및 토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

2.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권리자 등) ① 법 제12조 제2항 -----

-----.

1. ~ 7.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

-----.

1.·2. (현행과 같음)

③ -----

용의 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 점용·사용을 하려는 자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u>법 제12조 본문</u>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1.·2. (생략)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u>법 제12조</u>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1.·2. (생략)	----- ----- ----- ----- <u>법 제12조</u> <u>제2항 각 호 외의 부분</u>----- ----- ----- ----- -----. 1.·2. (현행과 같음) ④ ----- <u>법 제12조</u> <u>제2항</u>----- ----- ----- -----. 1.·2.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266